

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

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5. 10.
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직권말소 대상 업체

업체명	업종 [등록번호]	대표자명	소재지
(주)와이앤제이푸드 농업회사법인	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) [제220160476009호]	최*영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005

2. 처분사항

- 시정명령('22. 5. 24.자)

3. 처분사유

- 정기교육·훈련 미이수(이수기한: 2019.5.22.~2020.12.31.)

4. 근거법령

-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위반
 -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[별표14의2] 제9호에 근거하여 처분

5. 고지사항

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,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

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
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※ 문의: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한결 / 062-602-1306)